

EU 분류체계의 은행산업 적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임수빈 전임연구원(soobin@kdb.co.kr)

- I. EU 분류체계(EU Taxonomy)의 개요 Ⅲ. 시사점
II. 은행산업의 EU 분류체계 적용

EU 분류체계(EU Taxonomy)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EU 공통의 기준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과학적·기술적 수단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 유럽의 신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2019년) 이행에 있어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EU 분류체계의 수립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2018년)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었다.

EU 분류체계는 2021년부터 시행중인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의무공시 기준으로 활용되어, 기업과 투자자가 정확한 ESG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금융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은행산업의 경우, EU 분류체계 도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고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정비할 수 있다.

EU 분류체계의 은행산업 적용시 기업 앞 지원된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경제활동과 매칭하여 지속가능한 부분을 파악할 것이 요구되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 EU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은행은 UNEP FI가 제시한 6단계 절차와 원칙, Deutsche Bank, DBS 등의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적 적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과 그 제도적 기반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Taxonomy) 및 녹색금융 모범규준 수립 등 녹색금융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여, 국내 은행 또한 자체 녹색금융체계를 수립하고, 환경, 사회, 산업 및 기술 전문가 육성 등 관련 역량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EU 분류체계(EU Taxonomy)의 개요

1. EU 분류체계의 정의와 특징

□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수단

- EU 분류체계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EU 공통의 기준으로 2018년부터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민간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립중에 있음
 - 기후변화 완화·적응 등 6가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3가지 판단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
 - EU 분류체계는 기업별 지속가능성이 아닌 경제활동 단위의 평가가 필요하며, 기업의 경제활동 중 지속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표 1〉 EU 분류체계의 환경목표 및 판단조건

환경목표	판단조건
①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온실가스 감축)	1)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SC : Substantial Contribution)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NSH : Do No Significant Harm)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주)} 준수 (MSS : Minimum Social Safeguards) ※ 상기 조건은 기술선별기준(TSC : 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의거 판단
②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주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인권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지침 등

자료 : EU TEG(2020.3), "Technical Report, Taxonomy: Final Report"

- 특히, TSC(기술선별기준)은 개별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NACE¹⁾(유럽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제시하고, 경제활동별 SC 및 DNSH 판단을 위한 상세 기술기준(CO₂ 배출량 등)을 마련하는 등 과학적·기술적 접근을 시도
 - 2020년 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관한 TSC가 마련되었으며,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한 TSC는 2021년 내 완료 예정²⁾

1) NACE : Nomenclature statistiqu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

2) 유럽집행위원회는 기술전문가그룹(TEG :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국제플랫폼(EU 및 14개국 당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TSC를 위임법률(Delegated Act)로 제정. 위임법률(Delegated Act)은 EU 법률의 상세 집행기준 등 보조적 요소들을 추가하여 제정

〈표 2〉 EU 분류체계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NACE 대분류	경제활동	완 화	적 응	NACE 대분류	경제활동	완 화	적 응		
임업, 농업	신규조림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바이오에너지 열병합발전	○	○		
	산림복원	○	○		태양열 냉난방	○	○		
	재조림	○	○		지열 냉난방	○	○		
	기존 산림 관리	○	○		가스 냉난방	○	○		
	산림 보전	○	○		바이오에너지 냉난방	○	○		
	다년생 작물 재배	○	○		폐열 냉난방	○	○		
	비다년생 작물 재배	○	○		집수, 처리, 공급	○	○		
	가축 생산	○	○		중양집중식 폐수처리	○	○		
제조업	저탄소 기술 제조	○	○	상하 수도, 폐기물 및 복원업	하수 슬러지 혐기성 소화	○	○		
	시멘트 제조	○	○		비유해 폐기물 분리수거 및 운송	○	○		
	알루미늄 제조	○	○		유기성 폐기물 혐기성 소화	○	○		
	철강 제조	○	○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	○		
	수소 제조	○	○		비유해 폐기물 물질 회수	○	○		
	기타 무기질 기초 화학물질 제조	○	○		매립 가스 포집 및 활용	○	○		
	기타 유기질 기초 화학물질 제조	○	○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	○		
	비료와 질소화합물 제조	○	○		인위적 배출가스 포집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원료 플라스틱 제조	○	○	운수 창고업	이산화탄소 수송	○	○		
	태양광 발전	○	○		포집된 이산화탄소 영구 격리	○	○		
	태양열 발전	○	○		철도 여객 운송	○	○		
	풍력 발전	○	○		철도 화물 운송	○	○		
	해양에너지 발전	○	○		대중교통	○	○		
	수력 발전	○	○		저탄소 교통 인프라(육상)	○	○		
	지열 발전	○	○		승용차와 상용차	○	○		
	가스 발전	○	○		도로 화물 운송서비스	○	○		
	바이오에너지 발전	○	○		도시 간 정기 버스 운송	○	○		
	송배전	○	○		수상 여객 운송	○	○		
	전기 저장	○	○		수상 화물 운송	○	○		
	열에너지 저장	○	○		저탄소 교통 인프라(수상)	○	○		
	수소 저장	○	○		정보 통신업	데이터 처리, 호스팅, 관련 활동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제조	○	○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 기반 솔루션	○		
		가스 공급 네트워크 개보수	○		○	건축, 부동산, 건물	건물 신축	○	○
		지역난방/냉방	○		○		건물 개조	○	○
히트펌프 설치 및 운영		○	○	개별 조치 및 전문 서비스	○				
태양열 열병합발전		○	○	금융보험	매입 및 소유	○			
지열 열병합발전		○	○		손해보험		○		
가스 열병합발전		○	○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활동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엔지니어링 활동 및 관련 기술 컨설팅		○	

주 : EU 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별 TSC 상세 기술기준 및 MSS 충족이 필요
 자료 : EU TEG(2020.3), "Technical Report", 임선영(2020.6), "EU 분류체계(EU Taxonomy) 논의 동향"

2. EU 분류체계의 수립 배경

□ EU 분류체계의 수립은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의 제도적 기초

- 2015.9월 채택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개도국의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을 위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 달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
 - SDGs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는 자국의 SDGs를 수립·추진중이며, 기업과 민간 투자자에 대한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압력도 강화

<참고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 ① 빈곤퇴치, ② 기아종식, ③ 건강과 웰빙, ④ 양질의 교육, ⑤ 성평등, ⑥ 깨끗한 물과 위생, ⑦ 깨끗한 에너지,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⑨ 산업·혁신·사회기반시설, ⑩ 불평등 감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⑫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⑬ 기후변화와 대응, ⑭ 해양생태계 보존, ⑮ 육상생태계 보호, ⑯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 ⑰ 지구촌 협력

자료 : KoFID-KOICA(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2015.12월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로 선진국·개도국 등 모든 당사국이 참여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상승을 1.5℃로 제한하는 '노력목표'를 설정
 - 당사국들은 자발적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을 2020년까지 완료하였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로 갱신 예정이며, 당사국총회는 2023년부터 5년마다 목표 부합여부를 점검
-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금융³⁾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8.3월 'EU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을 수립
 -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고위급 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이 구성되어 EU의 지속가능금융 추진전략을 제시(2018.1월)

3) ESG(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금융 및 투자활동

- 상기 전략을 토대로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을 수립 (2018.3월)하고, 이행에 필요한 세 가지 규정⁴⁾을 제정(2019~2020년)
 -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저탄소·탄소 영향 벤치마크 규정(Climate Benchmarks Regulation), ESG정보공시 규정(ESG Disclosure Regulation)
- 2019.12월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
 - 10년간 기후·환경분야에 1조유로 이상의 공공·민간자금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속가능금융을 적극 활용
- EU 분류체계 수립은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분류체계 규정⁵⁾에 근거하며, 지속가능금융 확대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
 - EU 회원국, 기업, 금융기관 앞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판단기준을 제공할 목적
 - 기업의 저탄소 전환계획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그린워싱(Greenwashing)⁶⁾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민간금융을 EU의 환경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

<표 3> EU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

과제	추진내용	
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1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활동 정의(Taxonomy 개발)
	2	지속가능금융 상품 및 활동 표준·레이블 개발
	3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확대
	4	금융활동지침에 지속가능성 요소 포함
	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성과 판단기준) 개발
금융 리스크 관리 개선	6	시장조사와 신용평가지 지속가능성 고려
	7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의무 규정에 지속가능성 포함
	8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기준에 지속가능성 고려
시장 관행 개선	9	ESG정보공시 및 회계규정 개선
	10	지배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금융시장의 단기성과 선호 경향 지양

자료 : 송지혜(2019.8),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 EU사례를 중심으로" 참고

4) EU의 규정(Regulation)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모든 EU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5) EU의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은 2019.5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출하고, 2019.12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채택
 6)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실질적인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으나 친환경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3. EU 분류체계의 구체적 활용

- EU 분류체계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의무공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EIB)의 금융지원, 유럽은행당국(EBA)의 ESG리스크 관리감독 등의 분야에도 활용
 - EU 지역내의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금융상품 및 경제활동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
 - 의무공시는 2021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 관련 정보(2022년 제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모든 환경목표로 범위를 확대(2023년 제재)
 - 투자자와 기업은 이들 공시자료를 활용,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가능
 - ‘EU 기후은행’으로 전환예정인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은 2021년부터 모든 신규 금융활동에 대하여 EU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녹색채권 및 녹색대출상품 개발에도 활용
 - 유럽은행당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은행의 ESG리스크 관리 및 감독과 관련하여 EU 분류체계의 역할을 검토(~2021.6월)

〈표 4〉 EU 분류체계 사용주체별 활용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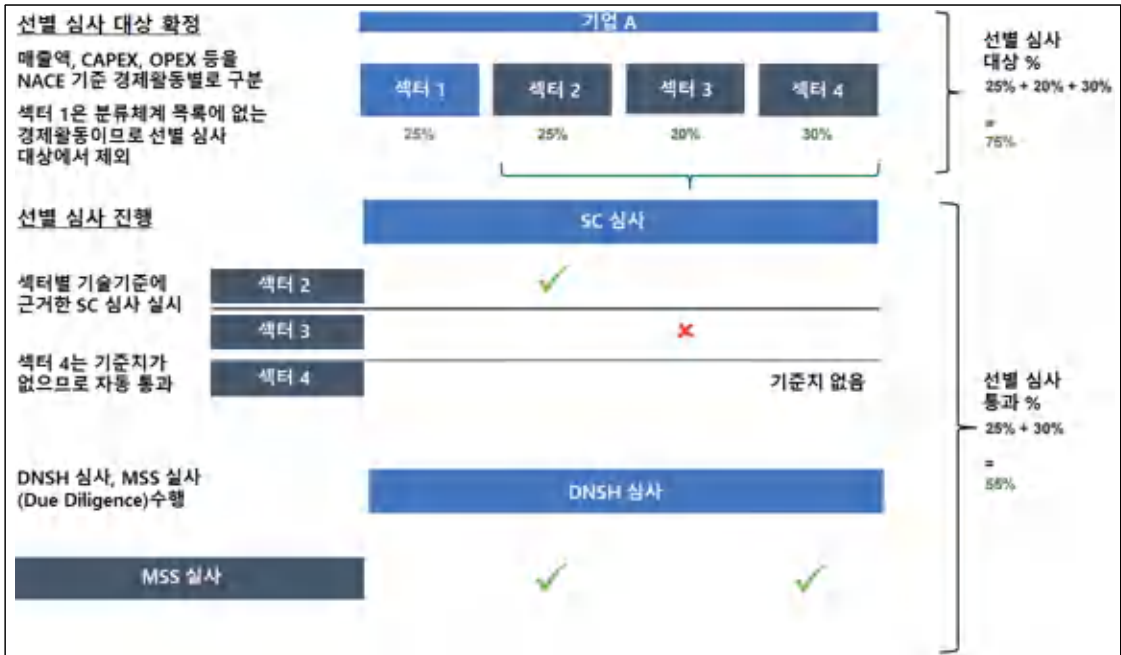
사용주체	내용
금융기관	EU에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시장 참여자는 EU 분류체계를 준수하여 지속가능금융상품 정보를 공시 · 금융상품 지속가능성 판단시 EU 분류체계를 사용한 방법과 범위 · 개별 금융상품이 기여하는 환경목표 ·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비중
기업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에 의해 비재무정보 ^{주)} 공시 의무가 있는 대기업은 EU 분류체계를 적용한 경제활동 정보를 공시 · 자산, 프로젝트 단위의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매출 (Turnover) 비중, 자본지출(CAPEX) 또는 운영지출(OPEX)을 공시
EU 및 회원국	EU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녹색금융상품 또는 녹색채권에 대한 기준을 수립 · EU Green Bond, EU Ecolabel, 각 회원국의 녹색투자상품 레이블링 (Labeling) 체계 수립 등

주 : 환경사회적 책임, 종업원 대우, 인권존중, 반부패와 뇌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
 자료 : EU TEG(2020.3), "Technical Report" 및 UNEP FI(2021.1), "Testing the Application of the EU Taxonomy to Core Banking Products"를 참고하여 재구성

□ (기업 평가) 금융기관은 개별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활동별로 EU 분류체계 판단 조건을 심사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비중을 계산

- 기업의 ESG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기업의 매출액 등을 NACE 기준 산업 섹터별로 구분하고, EU 분류체계상 TSC가 제시된 섹터만을 대상으로 선별 심사(Screening Test)를 진행
- TSC의 상세 기술기준에 의거 SC·DNSH를 심사하고, MSS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비중을 도출
 - SC 심사시 TSC에 제시된 기준치를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치가 없는 섹터는 자동 통과 (기준치 예시 : 발전업의 경우 현재 1kWh 당 CO₂ 배출량 100g 미만)

<그림 1> 개별 기업에 대한 EU 분류체계 적용



자료 : EU TEG(2020.3), "Technical Report"를 참고하여 재구성

7) 본문에 소개한 기업 평가 및 포트폴리오 평가는 기업 및 자산에 대한 ESG공시자료가 없는 경우의 EU 분류체계 적용 방법에 대한 예시임

□ (포트폴리오 평가) 금융기관은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경제활동 비중,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금융상품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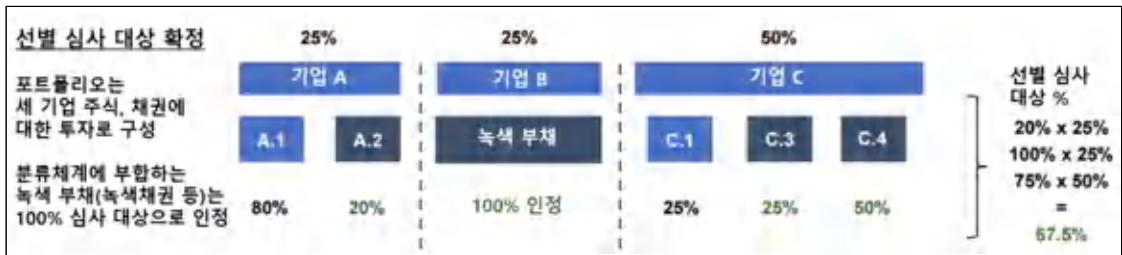
- 투자대상기업의 경제활동별로 선별 심사를 거쳐 EU 분류체계에 적합한 경제활동 비중을 도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계산
 - 투자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금융상품이 포함된 경우 100% 선별 심사 대상으로 인정

〈그림 2〉 포트폴리오에 대한 EU 분류체계 적용-1



자료 : EU TEG(2020.3), "Technical Report"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3〉 포트폴리오에 대한 EU 분류체계 적용-2



자료 : EU TEG(2020.3), "Technical Report"를 참고하여 재구성

II. 은행산업의 EU 분류체계 적용⁸⁾

1. EU 분류체계 적용의 의의

□ EU 분류체계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은행과 고객을 이해하는 기준을 제공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정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관성, 투명성을 제공
 -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하여 은행 신뢰도를 높이며, 은행의 평판리스크와 주주에 대한 책임 리스크를 완화
- 은행과 고객의 '공통언어'로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고객을 파악하는 수단
 -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평가하는 엄격한 단일 기준으로서 기능
 - 의무공시에 EU 분류체계가 활용됨에 따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품질 향상

□ 은행의 지속가능금융 관련 수익창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강화의 기회

- 은행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
 - EU 분류체계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강점을 발전시키는 기회
 -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고객의 이해도를 높여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
-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정비하는 기회
 - EU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

8) UNEP FI(2021.1), "Testing the application of the EU Taxonomy to core banking products: High level recommendations"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 보고서는, '20.3~8월중 전세계 26개의 은행이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40개 이상의 금융거래와 고객에 EU 분류체계를 시범적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Case Study의 첫 번째 결과물임

□ 은행산업에 EU 분류체계를 도입시 자금 사용처 분류, 데이터 수집·관리 및 운영상 고려 사항이 존재

- EU 분류체계는 기업 앞 지원된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경제활동과 매칭하여 지속가능한 부분을 파악할 것을 요구
 - 채권, PF 등의 금융상품은 기업의 자금 사용처를 지속가능경제활동으로 제한하고 관리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EU 분류체계의 적용이 활발
 - 이에 반해, 일반 목적의 금융상품은 은행의 거래건수, 자산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해당 자금이 기업의 어떠한 경제활동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매칭하기가 어려움

- 기업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 타당성, 검증 이슈 발생
 - 상장사 등 일부 기업들만이 기업정보를 공시하는 등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
 - 중소기업의 경우 자원, 전문성,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TSC 평가에 필요한 정보 생산에 한계
 - EU 이외 지역의 기업들은 EU 분류체계 관련 공시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생산할 인센티브가 부족
 - 기업 매출액 등의 데이터가 분류체계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후변화 적응 데이터를 평가할 방법론이 부재

- EU 분류체계를 적용한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
 - 한 기업의 영업활동들은 NACE 기준에 의거 분류되어야 하고, NACE 외에 다른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두 체계 간 맵핑(mapping)이 필요
 - 고객 앞 서류 징구량과 금융거래 소요시간이 늘어나며, 제3의 독립된 검정기관 등 새로운 지원 서비스 활용이 요구
 - 금융상품에 공통의 레이블을 붙여 관리하는 등 데이터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T 인프라 개발비용 소요

Case Study에 참여한 스웨덴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의 경우 EU 분류체계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상 필요한 산업지표의 약 30%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2. EU 분류체계의 은행산업 적용 원칙과 권고사항

□ UNEP FI⁹⁾는 은행산업의 EU 분류체계 적용과 관련된 6단계 절차와 원칙을 제시

- (1단계) 자금 사용처를 가능한 한 상세히 파악
 - 자금의 사용용도가 특정된 금융상품은 EU 분류체계의 어떤 환경목표에 기여하는지 파악하기에 용이
 - 사용용도 제한이 없는 금융상품이라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상세히 파악하여 적합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
- (2단계) 자금 사용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 옵션을 선택
 - 실제 자금사용보다는 고객의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다수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경제활동별로 분할
 - 사용용도가 특정된 부분으로 EU 분류체계 적용 범위를 한정
 - 사용용도 제한이 없는 유연성을 장점으로 유지하면서도 EU 분류체계 적용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개발
- (3단계)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금융상품 및 경제활동이 기여하는 환경목표를 범주화
 - 기여하는 환경목표와 활동의 성격¹⁰⁾을 분류함으로써 TSC 평가 영역을 세분화
- (4단계) TSC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고객 앞 요구
 - EU 분류체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와 데이터는 고객에 의해서만 획득 가능하므로, 고객은 은행 앞 정보 제공 책임을 부담
 -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고객 앞 정보 요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5단계) SC 조건은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며, 적합한 근거가 필요
 - 공시 또는 개별 입수를 통해 기업정보, 독립적·전문적 연구자료(환경영향평가 등)를 취득 가능한 경우 SC 심사 근거로 인정

9)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10) Own Performance : 그 자체로 환경목표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활동(저탄소 에너지 생산 등)
 Enabling Activity : 다른 활동의 환경성과를 개선하면서 환경목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활동
 (저탄소 부품, 장비, 기계 생산 등)

Transition Activity :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라는 환경목표 달성에 한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하는 활동

- (6단계) 은행은 아래 옵션을 통해 DNSH, MSS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
 - 의무공시 규정이 발효되기 전, EU 지역의 기업과 자산이 환경사회 규정을 위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EU 법률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예를 들어 Case Study에 참여한 스웨덴 Swedbank는 평가대상기업이 EU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EU 규정(Regulation)과 회원국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모든 DNSH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음
 -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기간중 환경사회 규정을 위반하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조건을 계약서에 추가
 - 인증제도와 레이블(Label)을 활용하고, 자체 리서치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완료
 - 문제되는 이슈가 중요하지 않으면, 시간제약을 고려하여 금융거래를 진행

□ EU 분류체계를 은행 상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내외부적 지원이 필요

- 은행은 EU 분류체계의 도입에 필요한 조직 간 협업체계를 구성
 - 은행 내 역할과 책임을 조율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직 필요
 - Front Office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IT 담당조직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 수집·처리의 자동화를 추진
 - 법률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고객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

- 은행 내 전문가 육성을 통한 효율적 운영 지원
 - 환경, 사회, 산업 및 기술 전문가는 지속가능금융 지원체계 마련, 상품 설계, 기업의 TSC 데이터 검증 및 실사,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참여
 - EU 분류체계 관련 지식과 지속가능금융상품에 대한 직원 교육 수행

- 규제당국 등은 관련 제도의 정비, IT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
 - 은행산업 공통의 적용방법론 개발, 인증·검정 및 모니터링 지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수단 개발, 공동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운영
 - 기존 국제 프레임워크 및 인증체계¹¹⁾는 EU 분류체계와의 맵핑자료를 제공

11)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국제자본시장협회)의 Green Bond Principles (녹색채권원칙), LMA(Loan Market Association, 유럽대출채권거래협회)의 Green Loan Principles(녹색대출원칙), Sustainability-Linked Loan Principles(지속가능성연계대출원칙),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의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

〈참고 2〉 EU 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PF 원칙

- 기업대출 원칙
 -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추가할 것을 고려
 - 일반 목적의 대출에 다수의 경제활동 섹터가 연관된 경우 지배적이고 중요한 경제활동만을 선택하여 평가를 수행
 - 가능한 한 Green Loan, Green Bond 등 기존의 인증체계를 활용
 - 제3의 독립기관이 검증·모니터링 과정에 참여
 - 대출자금의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환경사회 KPIs(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준수하면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대출상품을 마련
 - RCF(Revolving Credit Facility, 회전한도대출)를 EU 분류체계 적용 한도, 미적용 한도로 분할하여 사용
 - 고객이 영위하는 영업활동의 산업별 매출비중(예: 발전업 60%, 철강제조업 40%)에 따라 대출금을 구분하여 은행 포트폴리오를 공시
- 중소기업대출 원칙
 - 평가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약정과 모니터링이 필요
 - 일반 목적의 대출에서 EU 분류체계 부합 비중을 추정하는 것을 용인
 - 은행은 산업별 대응지표와 통계척도를 개발, 외부 인증체계를 활용
- PF(Project Finance) 원칙
 - PF 거래는 독립된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높은 수준의 환경사회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EU 분류체계 부합여부를 평가하기에 적합
 - 아래의 원칙들은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 기존 관행과도 일치
 - 제공 서비스(자문, 주선, 대출)와 무관하게 평가 진행 사실을 고객 앞 통지
 - 법률계약서상 Covenant(서약), Event of Default(채무불이행 사유)의 형태로 고객 앞 EU 분류체계 준수 요구를 선택적으로 추가
 - 외부 전문가에 대한 환경사회 평가 수행 위임사항에 EU 분류체계 또한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활용가능함을 명시
 - 금융거래 약정기간 중, 가능하면 프로젝트의 운영단계에서도 EU 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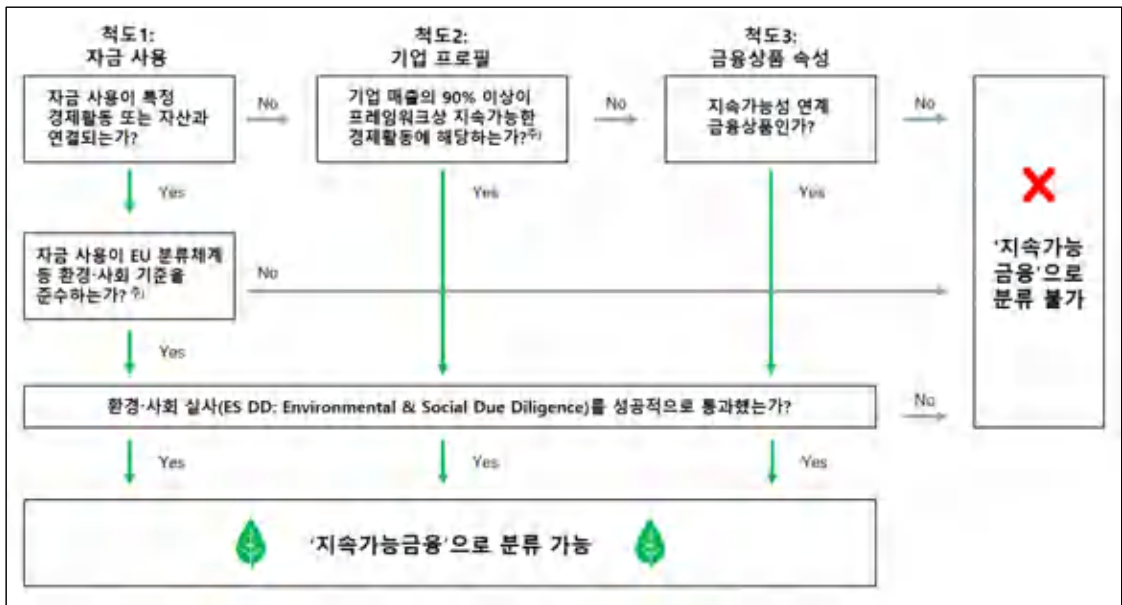
자료 : UNEP FI(2021.1), "Testing the Application of the EU Taxonomy to Core Banking Products"

3. 해외은행의 EU 분류체계 활용사례

□ Deutsche Bank는 2020.7월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기업 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 판단시 EU 분류체계를 활용중

- Deutsche Bank는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의 6대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를 자금 사용, 기업 프로필, 금융상품 속성의 3가지 척도에 의거 분류
 - (환경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과 건강한 생태계의 보호·복원·옹호, 순환경제 전환
 - (사회의 지속가능성) 인권 존중, 적절한 생활환경, 필수 서비스 접근성
- Deutsche Bank는 자금 사용처 특징이 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 활동 단위로도 EU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EU 분류체계의 모든 기준치를 평가에 활용할 계획

〈그림 4〉 Deutsche Bank의 지속가능금융 분류 프로세스



주 : EU 분류체계, ICMA 녹색채권원칙 등을 적용
 자료 : Deutsche Bank(2020.7),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를 참고하여 재구성

□ 싱가포르의 DBS는 2020.6월 지속가능·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녹색 금융상품 판단기준의 하나로 EU 분류체계를 활용

- DBS는 지속가능·전환금융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①녹색, ②지속가능발전목표, ③전환 및 ④전환기업의 4가지 레이블(Label)로 분류
 - ①~③은 DBS 분류체계¹²⁾를 충족하는 경제활동에만 사용되는 금융상품이며, 그 중 EU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녹색(Green)' 레이블을 부여
 - ④는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으나, 과거 탄소저감 실적이 있는 기업(3Ds¹³⁾)에 제공된 금융상품만 해당

- DBS는 사용용도가 특정된 금융상품에만 EU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일반 목적의 녹색금융상품은 3Ds에 의한 저탄소 전환기업에만 제공함으로써 사용처 분류 문제를 실무적으로 완화

-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인증시 대출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관리에도 노력

〈표 5〉 DBS 지속가능·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금융거래 분류

레이블(Label)	정의 및 분류기준	
① 녹색(Green)	EU 분류체계, CBI 기후채권 분류체계, ICMA 녹색채권원칙 또는 LMA 녹색대출원칙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DBS 분류체계
②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aligned)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③ 전환(Transition)	업계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축하거나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경제활동	
④ 전환기업(Corporate in Transition)	최근 1년 이내 탄소집약적 자산을 처분(Divest), 탄소집약적 활동에 의한 매출비중을 축소하거나 녹색·사회적 기업 인수를 통해 매출을 다각화(Diversify),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Decarbonize)한 기업	3Ds

주 : CBI(Climate Bond Initiative, 기후채권이니셔티브),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국제자본시장협회), LMA(Loan Market Association, 유럽대출채권거래협회)

자료 : DBS IBG(2020.6), "Sustainable & Transition Finance Framework & Taxonomy" 참고

12) EU 분류체계 등 국제 프레임워크의 지속가능금융 원칙들을 조합한 자체 분류체계

13) DBS의 저탄소 전환기업 판단기준(3Ds : Divest 처분, Diversify 다각화, Decarbonize 감축)

Ⅲ. 시사점

-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수단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의 제도적 기반
 - EU 분류체계의 핵심은 기업의 경제활동 중 지속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지속가능성 판단의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제시
 - 2021년부터 EU의 금융시장 참여자와 대기업은 EU 분류체계에 근거한 지속가능금융상품 및 경제활동을 의무적으로 공시
- 은행의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의 도입은 지속가능금융 관련 수익창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강화의 기회로서, UNEP Fi가 제시한 원칙 및 절차, 해외은행 사례를 참고한 실무적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자금 사용처와 경제활동을 매칭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영업활동별 분류 또는 분류체계 적용범위 제한 등의 옵션을 선택
 - Deutsche Bank, DBS 등 해외은행은 EU 분류체계 활용 방법과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자금 사용처 매칭에 대한 유연한 해법을 고안
 - 데이터 수집·관리에 고객, Front Office, IT 담당조직 등 내외부적 참여가 요구되며, 선별 심사시 SC는 엄격성, DNSH·MSS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
-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수립중으로 이에 대한 국내 은행의 노력도 요구
 - 2021.상반기중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Taxonomy)를 수립하고, 금융위는 금융권 공통의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
 - 은행은 ESG 전략 및 녹색금융체계의 수립과 더불어 환경, 사회, 산업 및 기술 전문가 육성에 주력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

참고문헌

[국문자료]

- 금융위원회·환경부(2021),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1.29일 보도
- 송지혜(2019),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 KIEP
기초자료 제19-13호
- 외교부, <http://mofa.go.kr> (외교정책 > 국제기구·지역협력체 > EU)
- 유지혜(2020), “유럽 그린딜 추진 현황”, 주간 KDB리포트 제884호
- 이시은(2020), “일본 주요 은행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현황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74호
- _____ (2021), “유럽투자은행의 로드맵 발표와 기후변화 대응”, 주간 KDB리포트
제911호
- 임선영(2020), “EU 분류체계(EU Taxonomy) 논의 동향”, KCGS Report
- 임소영(2020), “그린뉴딜의 기준, 녹색 분류체계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 임수빈(2020), “EU 분류체계(Taxonomy) 현황과 시사점”, 주간 KDB리포트 제891호
- _____ (2021), “DBS의 지속가능·전환금융 추진 사례”, 주간 KDB리포트 제912호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 KoFID·KOICA(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영문자료]

- DBS IBG(2020), “Sustainable & Transition Finance Framework & Taxonomy”
- Deutsche Bank(2020),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 Deutsche Bank Group”
- EU TEG(2020), “Technical Report, Taxonomy: Final Report”
- UNEP FI(2021), “Testing the Application of the EU Taxonomy to Core Banking
Products: High Level Recommendations”